

제271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008년 6월 26일 (목)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6. 26.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10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8년 6월 11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8. 6. 23)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1. 제안이유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을 반영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 2,685명 → 2,668명(△17)

- 집행기관의 정원 : 1,494명 → 1,426명(△68)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077명 → 1,130명 (+53)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4명 → 42명(△2)

나. 직종별·직급별 정원조정 : 감17명

- 일반직(△48) : 3급 △1, 4급 △1, 5급 △10, 6급 △16,
7급 △17, 8급 △3
- 별정직(△1) : 6급 △1
- 연구직(△6) : 연구관 △1, 연구사 △5
- 지도직(△1) : 지도사 △1
- 소방직(+53) : 소방령 +1, 소방경 +6, 소방위 +9,
소방장 +9, 소방교 +12, 소방사 +16
- 교원(△2) :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2
- 기능직(△12) : 8급 △2, 9급 △4, 10급 △6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

1. 정원 조정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5.1)」과 충북도가 발주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2)「2008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종합하여 충북도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충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정원관리 기관별(총괄)

| 기 관 별 | 정 원 | | | 비 고 |
|---------|-------|-----|-------|-----|
| | 현 행 | 증 감 | 조 정 | |
| 합 계 | 2,685 | △17 | 2,668 | |
| 의회사무처 | 70 | - | 70 | |
| 본 청 | 1,036 | △42 | 994 | |
| 직 속 기 관 | 1,317 | +35 | 1,352 | |
| 사 업 소 | 262 | △10 | 252 | |

2) 소요예산 1억7천만원 / 책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금창호 / 최종보고서 발간 : 2008년 5월

나. 기관별 세부내역

 본 청

| 실국명/실과명 | 정 원 | | | 비 고 |
|---------|-------|-----|-----|-----|
| | 현 행 | 증 감 | 조 정 | |
| 합 계 | 1,036 | △42 | 994 | |
| - 공 보 관 | 29 | △1 | 28 | |
| - 감 사 관 | 25 | △1 | 24 | |
| 정책관리실 | 112 | △4 | 108 | |
| 행 정 국 | 179 | +15 | 194 | |
| 경제통상국 | 110 | △5 | 105 | |
| 균형발전국 | 84 | △4 | 80 | |
| 건설방재국 | 101 | △4 | 97 | |
| 농 정 국 | 106 | △3 | 103 | |
| 보건복지여성국 | 86 | △4 | 82 | |
| 문화관광환경국 | 103 | △1 | 102 | |
| 생명산업본부 | 29 | △29 | - | 폐 지 |
| 소방본부 | 72 | △1 | 71 | |

 직속기관

| 실국명/실과명 | 정 원 | | | 비 고 |
|---------|-------|-----|-------|-----|
| | 현 행 | 증 감 | 조 정 | |
| 합 계 | 1,317 | +35 | 1,352 | |
| 충북과학대학 | 69 | △3 | 66 | |
| 자치연수원 | 53 | △8 | 45 | |
| 농업기술원 | 126 | △4 | 122 | |
| 보건환경연구원 | 58 | △4 | 54 | |
| 청주동부소방서 | 189 | +9 | 198 | |
| 청주서부소방서 | 136 | +5 | 141 | |
| 충주소방서 | 143 | +7 | 150 | |
| 제천소방서 | 146 | +13 | 159 | |
| 영동소방서 | 127 | +7 | 134 | |
| 증평소방서 | 97 | +3 | 100 | |
| 진천소방서 | 70 | +8 | 78 | |
| 음성소방서 | 103 | +2 | 105 | |

□ 사업소

| 실국명/실과명 | 정 원 | | | 비 고 |
|----------|-----|-----|-----|-----|
| | 현 행 | 증 감 | 조 정 | |
| 합 계 | 262 | △10 | 252 | |
| 도로관리사업소 | 67 | △3 | 64 | |
| 산림환경연구소 | 46 | △3 | 43 | |
| 축산위생연구소 | 67 | △3 | 64 | |
| 농산사업소 | 32 | △2 | 30 | |
| 청남대관리사업소 | 23 | - | 23 | |
| 여성발전센터 | 12 | - | 12 | |
| 내수면사업소 | 15 | +1 | 16 | |

나. 3)총액인건비와의 관계

2008년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충청북도의 총액인건비는 4) **1,731억원**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 1,647억원을 차감하면 금년도 운용 가능 총액인건비는 84억원으로 보여지며, 이는 1인당 기준단가 58,500천원(인건비, 물건비 등 포함 총액을 기준인력수로 나눈 값)을 적용할 때 144명분의 인건비로 분석됨.

※ 2008년도 충청북도 총액인건비 현황

- 행정안전부 산정 제시액 : 1,731억원
- 충청북도 인건비 당초예산액 : 1,647억원
- 충청북도 운용 가능 여유액 : 84억원

그러나, 2008년 1월 1일, 기 증원된 38명과 행정안전부가 제

3)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연도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관리토록 하는 제도

4) 2007년 1,610억원 대비 121억원 증가

시한 2008년 소방확충인력 53명(3교대 40명, 관서 신설 13명), 그리고 5)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 절감을 권고한 행정안전부의 조직 개편지침 등에 따른 금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2008년도 충북도의 총액인건비 여유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3교대 근무 및 관서 신설로 인한 소방직 53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48명 등 기타 직종 70명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조정을 권고한 행정안전부의 지침 및 총액인건비 한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을 위해서는 각 실·국별로 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나, 금번 정원 조정에서 소방분야를 제외한 모든 실·국의 정원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부서인 6) 행정국 정원의 경우, 15명이 증가한 194명으로 도 전체의 조직 관리 및 인사 운영상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금번 정원 조정으로 발생하게 되는 초과 현원에 대해

-
- 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5.1)」의 정원조정 기준
 ⇒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 절감을 기준으로 그간의 자율절감 노력도와 최근 5년간 인구증감 등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 차등설정된 목표치에 따라 감축
- 6) 정책관리실 108명, 경제통상국 105명, 농정국 103명, 문화관광환경국 102명, 건설방재국 97명, 보건복지여성국 82명, 균형발전국 80명

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장·단기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66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426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130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2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70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고, 그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 직종별 | 기관별 | 합계 | 본청 | 의회사무처 | 직속기관 | 사업소 |
|----------|--------------------|-------|-----|-------|-------|-----|
| 총정원 | | 2,668 | 994 | 70 | 1,352 | 252 |
| 정무직(도지사) | | 1 | 1 | | | |
| 일반직 | 소계 | 1,051 | 819 | 44 | 61 | 127 |
| | 2-3급 | 1 | | 1 | | |
| | 3급 | 8 | 7 | | 1 | |
| | 3-4급 | 1 | 1 | | | |
| | 4급 | 59 | 42 | 7 | 4 | 6 |
| | 5급 | 211 | 174 | 10 | 11 | 16 |
| | 6급 | 357 | 283 | 14 | 18 | 42 |
| | 7급 | 359 | 273 | 12 | 23 | 51 |
| | 8급 | 54 | 38 | | 4 | 12 |
| | 9급 | 1 | 1 | | | |
| 별정직 | 소계 | 21 | 13 | 3 | 4 | 1 |
| | 1급 | 1 | 1 | | | |
| | 5급 | 4 | 3 | 1 | | |
| | 6급 | 10 | 4 | 1 | 4 | 1 |
| | 7급 | 3 | 3 | | | |
| | 8급 | 2 | 1 | 1 | | |
| 연구직 | 소계 | 136 | 2 | | 105 | 29 |
| | 연구관 | 20 | | | 17 | 3 |
| | 연구사 | 116 | 2 | | 88 | 26 |
| 지도직 | 소계 | 24 | | | 24 | |
| | 지도관 | 6 | | | 6 | |
| | 지도사 | 18 | | | 18 | |
| 소방직 | 소계 | 1,130 | 68 | | 1,062 | |
| | 소방정 | 10 | 2 | | 8 | |
| | 소방령 | 30 | 10 | | 20 | |
| | 소방경 | 65 | 5 | | 60 | |
| | 소방위 | 82 | 10 | | 72 | |
| | 소방장 | 157 | 12 | | 145 | |
| | 소방교 | 345 | 25 | | 320 | |
| | 소방사 | 441 | 4 | | 437 | |
| 교원 | 소계 | 42 | | | 42 | |
| | 학장 | 1 | | | 1 | |
| |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 30 | | | 30 | |
| | 조교 | 11 | | | 11 | |
| 기능직 | 소계 | 263 | 91 | 23 | 54 | 95 |
| | 6급 | 11 | 8 | 1 | 1 | 1 |
| | 7급 | 30 | 10 | 4 | 4 | 12 |
| | 8급 | 49 | 15 | 1 | 4 | 29 |
| | 9급 | 83 | 23 | 7 | 28 | 25 |
| | 10급 | 90 | 35 | 10 | 17 | 28 |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⑤(생략)

비 용 소 요 추 계 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의 총수 : 2,685명 ⇒ 2,668명(감17)

- 일반직(△48) : 3급△1, 4급△1, 5급△10, 6급△16, 7급△17, 8급△3
- 별정직(△1) : 6급△1
- 연구직(△6) : 연구관△1, 연구사△5
- 지도직(△1) : 지도사△1
- 소방직(+53) : 소방령 +1, 소방경 +6, 소방위 +9,
소방장 +9, 소방교 +12, 소방사 +16
- 교 원(△2) :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2
- 기능직(△12) : 8급△2, 9급△4, 10급△6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예산과목) | 소요비용 | 산 출 근 거 |
|---------------|------------------|---|
| 총 계 | △ 1,028,762 | |
| ○ 인건비 | △ 892,019 | |
| - 기본급 | △ 404,279 | ※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 적용 ○ 일반직 - 3급(△1명) : 20호봉 기준 - 4급(△1명) : 20호봉 기준 - 5급(△10명) : 18호봉 기준 - 6급(△16명) : 18호봉 기준 - 7급(△17명) : 15호봉 기준 - 8급(△3명) : 12호봉 기준 ○ 별정직 - 6급(△1명) : 18호봉 기준 ○ 연구직 - 연구관(△1명) : 15호봉 기준 - 연구사(△5명) : 16호봉 기준 ○ 지도직 - 지도사(△1명) : 16호봉 기준 ○ 소방직 - 소방령(중1명) : 18호봉 기준 - 소방경(중6명) : 17호봉 기준 - 소방위(중9명) : 17호봉 기준 - 소방장(중9명) : 15호봉 기준 - 소방교(중12명) : 12호봉 기준 - 소방사(중16명) : 10명호봉 기준 ○ 교원(△2명) -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 15호봉 기준 ○ 기능직 - 8급(△2명) : 12호봉 기준 - 9급(△4명) : 10호봉 기준 - 10급(△6명) : 10호봉 기준 |
| - 수 당 | △ 229,448 | |
| - 정액급식비 | △ 21,060 | |
| - 교통보조비 | △ 23,100 | |
| - 명절휴가비 | △ 80,852 | |
| - 가계지원비 | △ 88,365 | |
| - 연가보상비 | △ 44,915 | |
| - 기타직보수 | | |
| - 일용인부임 | | |
| ○ 물건비 | 210 | |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 |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 |
|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 - 직책급업무추진비 | | |
| - 직급보조비 | △ 36,150 | |
|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36,360 | |
| ○ 이전경비 | △ 136,953 | |
| - 성과상여금 | △ 25,367 | |
| - 연금부담금 | △ 92,327 | |
| - 국민건강보험금 | △ 19,259 | |
| - 연금지급금 | - | |